



서울특별시

서울의료원

제 308 회 시 의 회 정 령 회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

정관 개정 (안) 보고

2022. 06.

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

1.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(안) 보고

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지도·감독 등)
- 서울의료원 정관 제40조(정관의 변경)
-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(행정자치부, 2015.09)
- 시립병원 의료장비 통합구매 체계 개선 계획(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-4533, 2022.01.)

○ 필요성

- 임금피크제 운영에 따라 별도 정원 증원
- 시산하 의료기관 의료장비 통합구매 사업의 수행기관이 서울의료원에서 공공보건의료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원 감 조정

주요내용

○ 정원 조정 : 3명 증

-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 6명 증원
- 의료장비 통합구매 사업 정원(관리직, 기능직) 3명 감원

구분	계	임원	의료직	약무직	간호직	보건직	관리직	연구직	기능직	운영지원직	임금피크제 별도정원
현행	1,950	3	283	20	800	178	161	9	250	220	26
조정(안)	1,953	3	283	20	800	178	159	9	249	220	32
증감	3	-	-	-	-	-	△2	-	△1	-	6

향후계획

※ 추진과정에서 일정 변경 될 수 있음

- 이사회 정관 개정(안) 의결 : '22.하반기
- 서울특별시시장 승인 및 정관 개정(안) 시행 : '22.하반기

작성자 | 기획조정실장: 김정희 ☎2276-7015 | 기획경영팀장: 김학진 ☎7050 | 담당: 한경선 ☎7042

붙임.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

정관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1조(조직 및 정원) ① (생략) ② 직종별, 직급별 정원은 <u>별표 2</u> 와 같다. ③ ~ ④ (생략)	제41조(조직 및 정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직종별, 직급별 정원은 <u>별표 2</u> 와 같다. ③ ~ ④ (현행과 같음)

<개 정 전 · 후>

정 원 표

○ 총괄

구분	계	임원	의료직	약무직	간호직	보건직	관리직	연구직	기능직	운영지원직	임금피크제 별도정원	
정원	개정전	1,950	3	283	20	800	178	161	9	250	220	26
	개정후	1,953	3	283	20	800	178	159	9	249	220	32
	증감	3	-	-	-	-	-	△2	-	△1	-	6

○ 의료직

구분	계	전문의	일반의	전공의	
정원	개정전	283	177	3	103
	개정후	283	177	3	103
	증감	-	-	-	-

○ 약무·간호·보건·관리·연구·기능·운영지원직·임금피크제 별도정원

구분	계	1 급				2 급				3 급				약무· 간호· 보건· 관리직 4~6급	연구 직	기능직 (1~3 등급)	운영 지원직	임금 피크제 별도 정원				
		계	약 무 직	간 호 직	보 건 직	관 리 직	계	약 무 직	간 호 직	보 건 직	관 리 직	계	약 무 직						간 호 직	보 건 직	관 리 직	
정원	개정전	1,664	3	-	1	-	2	18	1	7	4	6	61	2	29	12	18	1,077	9	250	220	26
	개정후	1,661	3	-	1	-	2	18	1	7	4	6	61	2	29	12	18	1,075	9	249	220	32
	증감	3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	△2	-	△1	-